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238

발의연월일: 2024. 8. 27.

발 의 자:김영호·백승아·한민수

강선우 • 박희승 • 진선미

김준혁 · 김영배 · 민형배

문정복 · 문대림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 등이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기준이 되는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은 학술지원사업, 기초연구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으로 지침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그 이외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하여는 대학 등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그러나 각종 학위논문의 검증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체 검증 결과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연구윤리를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학등의 연구부정 의심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완적으로 교육부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연구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알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⑥ 대학등은 제4항에 따라 이루어진 검증의 결과, 내용 및 검증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이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 ⑦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검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학등이 제15조제5항에 따라 연구부정 의심 행위를 지체 없이

검증하지 아니한 경우

5. 대학등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23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5조제5항에 따라 연구부정 의심 행위를 지체 없이 검증하지 아니한 경우
- 1의2. 제15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1	~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
				정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여야
				<u>한다.</u>
<u><신 설></u>				⑥ 대학등은 제4항에 따라 이
				루어진 검증의 결과, 내용 및
				검증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부장관은 대학등이 제출한 사
				항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
				<u>다.</u>
<u><신 설></u>				⑦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이 제5
				항에 따른 검증을 수행하지 아
				니하거나 부실하게 수행한 것
				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통
				<u>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u>
				권으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신 설>

② ~ ④ (생 략)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u>⑧</u>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①
1. ~ 3. (현행과 같음)
<u>4. 대학등이 제15조제5항에 따</u>
라 연구부정 의심 행위를 지
체 없이 검증하지 아니한 경
<u> </u>
5. 대학등이 제15조제6항에 따
른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
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u> </u>
제23조(과태료) ①
<u>1. 제15조제5항에 따라 연구부</u>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검증 업

<신 설>

<u>1.</u> (생 략)

2. ~ 5. (생략)

② (생략)

정 의심 행위를 지체 없이 검증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제15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의3. (현행 제1호와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